

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보바스기념병원 의료정보시스템과 전산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의료정보윤리헌장 및 제규정과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법에서 정하는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의료법 제21조 2(전자의무기록) 3항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2.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 한다.
3. 병원 내 컴퓨터, 시스템 계정, 전산망, 기타 정보자원 등은 병원 당국이 본인에게 부여한 사용권한 내에서만 접근 및 사용하며 허락 받은 사용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병원 내 컴퓨터, 정보, 전산망, 기타 정보자원의 사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책임 있고 윤리적인 태도로 사용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5. 의료정보시스템이 가동 중인 컴퓨터에서는 근무시간 동안에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있는 모든 직원은 비업무용 인터넷의 사용을 금한다. 즉, 비업무용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외부 및 내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6. 병원 내 모든 정보 및 계정, 전산망 등의 자원은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
7. 허가 받은 사용자는 비 인가자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본인의 비밀번호 관리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신의 계정과 관련된 모든 사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8.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은 소프트웨어는 병원 내 컴퓨터에(로부터) 복사할 수 없으며, 본 병원과 별도의 사용권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병원 컴퓨터상에서 이용할 수 없다.
9. 병원에서 지급받은 전산장비를 소중히 다루고 분실·훼손 시는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10. 전산망에 연결된 어떠한 컴퓨터에서 보안상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전산팀(의료정보관리 담당부서 T.3144)으로 연락한다.

20 년 월 일

소속 및 부서 :

성 명 :

(서명)

보바스기념병원장 귀하